보 도 자 료

공동 조사 박상혁 의원실 · (재)한국컨설팅산업재단 (부설)개인정보보호진흥원

공공기관 홈페이지 1,347 곳 전수조사
개인정보 수집 설문 149 건, 모두 보안인증 없는 서비스 사용

- 137 개 기관 설문 149 건 최종 분석…구글폼 90 건·네이버폼 47 건·모아폼 11 건
- 주민등록번호·건강·장애 정보 입력 문항 10 건, 안전조치 안내 미흡 98.7%
- 결과 통보 뒤 40 개 기관 회신, 35 곳(87.5%) 수용·개선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받는 온라인 설문·신청서 149 건이 모두 공공부문 보안인증을 받지 않은 민간 설문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가운데 10 건은 주민등록번호나 건강·장애 정보까지 입력하도록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실과 (재)한국컨설팅산업재단 부설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1,347 곳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조사 대상은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상 1,464 개 기관 가운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1,347 개 기관 전체다. 조사 기간은 2026 년 8 월 21 일부터 10 월 5 일까지다.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설문·신청서 링크를 진흥원의 자동진단도구 'SURE-CHECK'로 진단하고, 전문가가 결과를 다시 확인했다.

최종 통계는 진단 결과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결과 통보 공문을 보낸 137 개 기관의 설문 149 건을 기준으로 했다. 공문 발송 과정에서 해당 설문의 운영 주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관은 통계에서 뺐다.

기관 유형별로는 출연·출자기관 58 건(38.9%), 지방자치단체 56 건(37.6%)으로 두 유형이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이어 그 밖의 공공기관 18 건, 중앙행정기관 6 건, 지방공기업 6 건, 교육기관 3 건,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2 건이었다.

149 건이 사용한 설문 도구는 구글폼 90 건(60.4%), 네이버폼 47 건(31.5%), 모아폼 11 건(7.4%), 서베이몽키(SurveyMonkey) 1 건(0.7%)이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개한 인증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 설문 서비스는 모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지 않았다.

다만 이들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는 자체적으로 높은 수준의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서비스 자체의 보안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용 방식에 있다. 담당자 개인 계정으로 설문을 만들고, 응답을 내려받은

파일로 보관하면서 국민의 개인정보가 기관의 관리·통제 밖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나 건강·장애 정보처럼 민감하거나 유출 때 피해가 큰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설문은 10 건(6.7%)이었다. 한 재단의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에서는 참여 어린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한 중앙행정기관의 유가족 지원 실태 조사는 자녀의 치료·재활이 필요한 건강 상태를 물었다. 한 지자체의 시민 인식조사에는 장애 유형을 묻는 문항과 경품 지급용 휴대전화번호 문항이 함께 들어 있었다. 이 밖에 학생의 과거·현재 질병,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 장애인 등록 여부를 묻거나 청년 지원사업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13 자리를 받은 설문도 있었다.

※ 이번 통계는 공개된 설문 화면의 입력 요구 문항과 안내 내용을 분석한 것으로, 실제 응답자 수나 제출된 개인정보 건수를 집계한 것은 아니다. 조사는 응답 자료를 열람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았다.

■ 안내도 부족…결과 통보받은 기관 87.5%는 수용·개선

응답자에게 알려야 할 안내도 충분하지 않았다. 149 건 가운데 안전조치 안내가 없거나 일부만 게시된 설문이 147 건(98.7%)에 달했다. 같은 기준으로 위탁 안내는 143 건(96.0%), 국외이전 안내는 99 건(66.4%), 동의 거부권 안내는 91 건(61.1%)이 미흡했다. 응답자는 자신의 정보가 누구에게 맡겨지고 어디에 보관되는지 알기 어려운 상태였다.

재단은 9 월 9 일부터 10 월 8 일까지 설문 1 건당 1 건씩 모두 149 건의 결과 통보 공문과 분석보고서를 해당 기관에 보냈다. 이 가운데 40 개 기관이 회신했고, 16 곳은 설문 중단·링크 삭제·수집 정보 파기·안내문 보완 등 개선을 마쳤다. 19 곳은 진단 내용을 받아들여 즉시 또는 다음 조사부터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신 기관의 87.5%인 35 곳이 진단을 수용하거나 개선한 셈이다. 나머지 5 곳은 사실관계 소명이나 법령 해석 의견을 냈다.

한 공기업은 회신에서 해당 설문을 즉시 종료하고, 전 부서에 외부 설문 플랫폼 이용 시 유의사항과 CSAP 인증을 받은 플랫폼 사용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 인사이동 뒤 자료는 누가 관리하나…국감 답변 이행이 과제

박상혁 의원은 지난 13 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설문도구로 건강정보·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 등을 받는 관행과, 응답 자료가 내려받은 사본으로 남는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특히 "담당자가 인사이동을 하면 누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모른다"며, 정보를 수집한 뒤 관리 주체와 사고 대응 책임이 끊기는 문제를 짚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식 조사에 앞서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구글폼 등 보안이 확인되지 않은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권고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할 때 수탁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려고 위탁 기관에도 책임을 묻고 있으며, 앞으로 이런 책임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실은 이 같은 답변이 실제 시정으로 이어지도록 개인정보위·국가정보원·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기관별 설문 링크와 수탁업체가 쓰는 도구를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본부뿐 아니라 소속·산하기관과 지방 공공기관까지 기관별 시정 완료일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기관별 전환계획에는 담당 책임자, 사용 서비스, 기존 자료의 이관·권한 회수·사본 파기 계획과 완료 증빙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도입 기준도 분명하게 집행돼야 한다. 국가정보원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 24 조의 4 제 1 항은 공공기관이 민간 클라우드를 이용할 때 국정원의 '도입 가능 목록'에 등재된 서비스를 쓰도록 정하고 있다. 의원실은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상 동의·고지 점검과 함께 이 지침의 이행을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시달하고, 보안인증을 받은 서비스로 전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단, 국민은 개인정보가 대중정보됐다며 분노, 공공.기업은 개인정보 수집문제 불감증

온라인설문조사 링크, 개인정보법 준수 자동진단보고서 도구도 무료 국민 배포 시작

한편 한국컨설팅산업재단 정옥래 이사장은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국민은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자고 일어나면 통보오는데, 개인정보가 대중정보가 됐다고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의 유출은 수집단계부터 막아야 하는데 국민이 신뢰로 제공한 개인정보를 너무 쉽게 요구하고 관리하는 경향이 있어 공공기관과 기업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아울러 “재단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온라인설문조사를 누구나 설문링크만 넣으면 즉시 진단할 수 있는 국민용 SURE-CHECK 진단툴을 무료 공개했다” 며 “잘못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설문조사를 국민이 즉시 제보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끝>

붙임 공공기관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요약) 1 부.

붙임

공공기관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박상혁 의원실 · (재)한국컨설팅산업재단 개인정보보호진흥원 | 2026. 8. 21. ~ 10. 5. 진단분

요약

조사 범위	최종 분석 대상	민감·고위험 정보 입력
홈페이지 운영 1,347 개 기관 전수	137 개 기관 · 개인정보 수집 설문 149 건	10 건 (6.7%)

- **수집 도구:** 149 건 모두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받지 않은 설문 서비스 — 구글폼 90, 네이버폼 47, 모아폼 11, SurveyMonkey 1
- **안내 미흡률:** 안전조치 98.7%, 위탁 96.0%, 국외이전 66.4%, 동의 거부권 61.1%
- **기관 회신:** 결과 통보 149 건 중 40 개 기관 회신, 35 곳(87.5%) 수용·개선 완료
- **모든 수치의 기준:** 결과 통보 공문을 발송한 137 개 기관, 개인정보 수집 설문 149 건. 공문 발송 과정에서 설문 운영 주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기관은 제외

Ⅰ. 조사 개요

항목	내용
조사 목적	국가·공공기관이 공개 운영하는 온라인 설문·신청서의 개인정보 수집 실태 진단과 개선과제 도출
조사 주체	(재)한국컨설팅산업재단 부설 개인정보보호진흥원 (박상혁 의원실 공동)
조사 범위	개인정보 보호수준 진단 대상 1,464 개 기관 중 홈페이지가 있는 1,347 개 기관의 공개 설문 링크
조사 기간	2026. 8. 21. ~ 10. 5.
조사 방법	자동진단도구 SURE-CHECK 로 공개 링크를 진단한 뒤 전문가가 재확인
분석 대상	진단한 설문 중 결과 통보 공문을 발송한 137 개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설문 149 건
평가 기준	① 수집 도구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 여부 ② 수집 항목(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여부) ③ 처리 안내 게시 여부(목적·항목·보유기간·파기·위탁·국외이전·동의 거부권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21·23·24 조의 2·26·28 조의 8·29 조, 클라우드컴퓨팅법, 국가정보원 보안 기준
조사의 한계	공개 화면만 분석했으며 기관 내부·비공개·로그인 영역은 제외. 응답 자료를 열람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음. 실제 응답자 수가 아닌 입력 요구 문항과 안내 내용 기준

Ⅱ. 주요 결과

1. 기관유형별 현황

기관 유형	설문 수	비중
출연·출자기관	58	38.9%
지방자치단체	56	37.6%
그 밖의 공공기관	18	12.1%
중앙행정기관	6	4.0%
지방공기업	6	4.0%
교육기관	3	2.0%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2	1.3%
합계	**149**	**100%**

출연·출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전체의 76.5%(114 건)를 차지했다. 중앙부처에 대한 조치가 소속기관·산하 법인과 지방 공공기관까지 전달되도록 주무부처·지자체별 이행체계가 필요하다.

2. 수집 도구와 보안인증

설문 서비스	설문 수	비중	CSAP 인증
구글폼	90	60.4%	해당 서비스 인증 없음
네이버폼	47	31.5%	해당 서비스 인증 없음
모아폼	11	7.4%	해당 서비스 인증 없음
SurveyMonkey	1	0.7%	해당 서비스 인증 없음

구글폼·네이버폼·모아폼 등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공개한 인증 현황에서 해당 서비스의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이 확인되지 않았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이나 네이버의 다른 공공용 상품이 받은 인증은 이들 설문 서비스에 적용되지 않는다.

> 서비스 운영사는 자체적으로 높은 보안 체계를 갖추고 있다. **문제의 초점은 서비스의 보안이 아니라 이용 방식**에 있다. 공공기관이 기관의 관리·통제 밖에서 담당자 개인 계정과 내려받은 사본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면, 계정 관리·접근 권한·보관 위치·파기를 기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된다.

3. 개인정보 처리 안내 미흡률

안내 항목	미흡 설문 수	미흡률

안내 항목	미흡 설문 수	미흡률
안전조치	147	98.7%
위탁	143	96.0%
국외이전	99	66.4%
동의 거부권	91	61.1%

※ 미흡: 안내가 없거나 일부만 게시된 경우. 분모 149 건, 한 설문이 여러 항목에 중복 집계될 수 있음

4. 민감·고위험 정보 입력 문항 (10 건)

주민등록번호, 건강·장애 정보 등 민감하거나 유출 때 피해가 큰 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설문은 10 건이다. 주민등록번호 3 건, 건강·장애 정보 8 건이며 1 건은 둘 다 해당한다. 도구별로는 구글폼 5 건, 네이버폼 5 건이다.

번호	기관 유형	도구	설문 성격	입력 요구 정보
1	재단(출연·출자)	네이버폼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참여 어린이 주민등록번호
2	진흥원(출연·출자)	구글폼	학생 대상 행사 참가 신청	학생의 과거·현재 질병
3	지자체	네이버폼	주민 보건의료 요구도 조사	현재 앓고 있는 질병
4	재단(출연·출자)	구글폼	체험교육 프로그램 신청	장애 여부
5	지자체	구글폼	시민 인식조사	장애 유형 (경품용 휴대전화번호와 함께 수집)
6	재단(출연·출자)	구글폼	청년 지원사업 참여 설문	주민등록번호 13 자리, 구직 관련 초조·불안 경험
7	지자체	구글폼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 신청	주민등록번호
8	공공기관	네이버폼	주민 실태조사	의사가 진단한 만성질환
9	지자체	네이버폼	평생교육 요구 조사	장애인 등록 여부
10	중앙행정기관	네이버폼	유가족 지원 실태 조사	자녀의 치료·재활 필요 건강 상태

※ 기관 실명과 설문명은 공개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 제 24 조의 2 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제 23 조는 민감정보 처리에 별도 동의 또는 법령상 근거를 요구한다.

사례: 장애 유형과 휴대전화번호가 함께 수집되는 경우

한 지자체의 시민 인식조사에는 장애 유형 문항과 경품용 휴대전화번호 문항이 함께 있다. 두 항목이 같은 응답 행에 연결되면, 연락처만으로 특정인의 장애 상태를 알 수 있는 명부가 된다. 이 자료가 유출되면 장애 유형을 알고 접근하는 복지서비스 사칭, 맞춤형 사기, 사생활 공개 협박에 악용될 수 있다. 전화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알려진 장애·질환 정보는 되돌릴 수 없다.

사례: 아동·가족의 건강정보가 수집되는 경우

한 중앙행정기관의 유가족 지원 실태 조사는 자녀의 치료·재활 필요 여부를 물었고, 한 재단의 어린이 프로그램은 참여 어린이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았다. 지원이나 행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건강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쌓이지 않도록 항목별 필요성, 열람 대상, 보유기간과 파기 책임자를 문서로 정해야 한다.

5. 구글폼·네이버폼 사용 시 관련 법령·지침

구분	관련 조항	이용 방식의 문제점	확인 결과 (149 건 중)
① 처리위탁 공개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 조제 2 항, 제 30 조제 1 항	응답 저장·처리를 서비스 운영사에 맡기면서 수탁자를 공개하지 않음	위탁 안내 미흡 143 건 (96.0%)
② 국외이전	같은 법 제 28 조의 8 제 1 항	해외 서버에 저장될 수 있으나 이전 국가·보관 장소를 안내하지 않음	국외이전 안내 미흡 99 건 (66.4%), 구글폼 90 건
③ 안전성 확보조치	같은 법 제 29 조, 시행령 제 30 조	담당자 개인 계정 관리, 응답 시트 링크 공유, 내려받은 사본의 PC 보관으로 접근통제·접속기록 관리 곤란	안전조치 안내 미흡 147 건 (98.7%)
④ 최소수집·동의 거부권	같은 법 제 15 조제 2 항제 4 호, 제 16 조제 1 항·제 3 항	"필수 응답" 설정으로 불필요한 항목까지 받거나 동의하지 않으면 제출할 수 없게 설정	동의 거부권 안내 미흡 91 건 (61.1%)
⑤ 주민등록번호	같은 법 제 24 조의 2 제 1 항	자유 입력 칸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음	3 건 (어린이 프로그램, 청년 사업 등)
⑥ 민감정보	같은 법 제 23 조제 1 항	건강·장애 정보를 일반 동의만으로 이름·연락처와 함께 수집	8 건
⑦ 파기	같은 법 제 21 조제 1 항	설문 종료 뒤에도 응답 원본·연동 시트·내려받은 파일이 남아 파기 여부 확인 곤란	공개 화면으로 확인 불가, 기관 확인 필요
⑧ 클라우드 보안인증	클라우드컴퓨팅법 제 20 조제 2 항,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 24 조의 4 제 1 항	CSAP 미확인, 국정원 도입 가능 목록에도 없음	149 건 전부
⑨ 민감등급 업무정보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 2 조제 17 호, 제 66 조제 4 항	국민의 개인정보(민감등급)를 상용 서비스에 직접 저장	149 건 전부
⑩ 위탁사업 관리·감독	개인정보 보호법 제 26 조제 4 항,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 13 조	용역으로 운영한 설문도 발주기관의 관리 책임이 남지만 수탁자의 도구 사용을 확인하지 않음	예: 중앙부처 사업 수탁사가 운영한 진단 조사

※ 공개 화면 기준 진단 결과로서 위반 여부를 판정한 것이 아니며, 최종 판단은 권한 있는 기관의 절차에 따른다.

같은 문제가 기관 유형과 관계없이 반복되는 것은 공공기관의 온라인 개인정보 수집 도구에 관한 기준이 여러 법령

·지침에 흩어져 있고, 일부는 권고 수준에 그쳐 현장에서 구체적인 기준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사이버보안 기본지침은 행정규칙으로 직접적인 제재 규정이 없고, 클라우드컴퓨팅법은 보안인증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만 정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쓸 수 있는 도구와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III. 결과 통보와 기관 회신

구분	기관 수	내용
개선 완료	16	설문 중단, 링크 삭제, 수집 정보 파기, 안내문 보완 등
수용 (즉시·향후 반영)	19	진단 내용 이의 없음, 즉시 또는 다음 조사부터 반영
이의·소명	5	고지 사실 소명, 법령 해석 의견, 정정 요청
합계	**40**	**수용·개선 35 개 기관 (87.5%)** / 통보 149 건 (137 개 기관)

- 공문 발송 기간은 2026. 9. 9. ~ 10. 8.이며, 설문 1 건당 1 건씩 분석보고서와 회신서 서식을 첨부했다. 회신 방법은 회신서 37 곳, 전자우편 2 곳, 전화 1 곳이다.
- 한 공기업은 해당 설문을 즉시 종료하고, 전 부서에 외부 설문 플랫폼 이용 유의사항과 CSAP 인증 플랫폼 사용을 공지했다. 보유기간 종료 뒤 파기 시점·방법 명시, 설문 첫 화면의 담당부서·연락처 표시, 응답 데이터 접근권한 최소화도 약속했다.
- 진흥원은 개선권고 공문만으로 주의 환기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기관 실명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실태조사 결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제출하고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IV. 국정감사 질의·답변 (2026. 10. 13. 정무위원회)

쟁점	박상혁 의원의 질의·지적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의 답변
외부 설문도구	건강정보·주민등록번호·계좌정보 등 고위험 개인정보를 외부 설문도구로 받는 공공기관 관행 지적	심각한 사안은 정식 조사 전 사전 실태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고, 구글폼 등 수집 방식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답변
자료 관리·위탁기관 책임	설문 종료 뒤 사본이 남고 담당자 인사이동 뒤 관리·사고 대응에 공백 발생. 용역사에 맡긴 기관의 감독 책임 문제 제기	수탁업체와 함께 위탁한 기관 자체에도 엄격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답변
권고와 평가	가이드·권고 중심 대응만으로는 현장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답변
새로운 보안 위험	민간 서비스의 API 인증 취약점과 AI 활용 개발 확산에 따른 공공 보안 문제 지적	AI 로 인한 보안 취약점 가능성을 인정하고, 개발·설계 단계 가이드의 현장 활용을 독려하겠다고 답변

※ 답변은 언론에 보도된 발언을 요약한 것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 16. 외부 설문도구 이용 시 안전조치 준수와 안내서 보완

Ⅴ. 개선 과제

1. 관련법과 지침의 준수

조치	적용 근거	실행 내용
도구 점검·전환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제 24 조의 3·제 24 조의 4	인증·목록 등재·보안요건 증빙 확보, 미충족 도구의 신규 수집 중단, 적합 서비스로 전환
수집 항목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16·23·24 조의 2	목적별 필요성과 처리 근거 확인, 불필요 항목 삭제, 주민등록번호·민감정보 우선 시정
수탁자 통제	같은 법 제 26 조, 시행령 제 28 조	수탁자 도구·재위탁 사전 승인, 처리 현황 점검, 계약 종료 때 반환·파기 검수
자료·계정 관리	같은 법 제 21·29·30 조	기관 소유 관리 계정, 공유 권한 최소화, 접속·반출 기록 관리, 보유기간 종료 자료 파기

2. 관계부처 공동 조치

과제	내용
현황 전수 등록	개인정보위·행안부와 주무부처·지자체가 설문 링크, 운영 기관·수탁자, 도구, 수집 항목, 관리 계정·보관 위치를 관리대장에 등록. 소속·산하기관 누락 확인
도입 기준 공동 시달	개인정보위·국정원·행안부가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도입 가능 목록 의무와 개인정보 보호법상 수집·위탁·보관·파기 의무를 한 번에 확인하는 공동 점검기준 마련
기존 자료 정리	수집 중단일, 서비스 전환일, 기존 자료의 이관·권한 회수·사본 파기 완료일을 구분해 기관장이 책임자 지정. 내려받은 파일·공유본·수탁업체 보관본까지 처리 결과 제출
평가 반영	관리대장 등록, 도입요건 확인, 수탁업체 점검, 시정기한 준수, 파기 증빙을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와 기관장 평가에 연계. 반복 위반·불이행 감점 기준 마련
국회 보고	본부·소속·산하기관과 지방 공공기관까지 기관별 시정 완료일과 담당 조직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

Ⅵ. 보고서의 성격

- 이 보고서와 기관별 분석보고서는 법적 판단이 아닌 자율진단 결과이며, 위반 여부의 최종 확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권한 있는 기관의 절차로만 이루어진다.
- 진단 시점에 공개된 화면만 기준으로 하였고,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시했을 뿐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은 (재)한국컨설팅산업재단 부설 민간 공익기구로 정부기관이 아니며, 개선 권고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기관의 이의·소명은 사실관계를 확인해 처리하고 있다.

VI. 조사/보고기관

- (재)한국컨설팅산업재단은 재정경제부 지정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지정번호 제 4318 호, 관할 서울지방 국세청) 개인정보보호진흥원을 개설하여 사회에 만연한 개인정보유출을 국민,기업, 공공이 함께 방지하고자 공익적 조사, 피해방지국민지원, 개인정보보호실천선언, 우수한 실천기업 선정과 정보보호기술 우수기업을 발굴, 홍보 등의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문의 (재)한국컨설팅산업재단 개인정보보호진흥원 02-501-2906 | cs@kcf-korea.org